등록금징수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8. 10.
개 정	1999. 7.
개 정	2007. 3.
개 정	2010. 6.
개 정	2013. 2.
개 정	2016. 7.
개 정	2016. 11.
개 정	2018. 6.
개 정	2019. 3.
개 정	2019. 7.
개 정	2019. 11.
개 정	2020. 6.
개 정	2021. 9.
개 정	2023. 2.
개 정	2024. 12.
개 정	2026.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②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정한 등록금을 징수한다.

제3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①총장은 등록금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로 정한 장학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총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등 특기신장이나 산학협동 등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총장은 본 대학의 산학협력 유관기관 직원 또는 각종 단기과정의 교육훈련기관 훈련생에 대한 위탁교육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들의 등록금을 상호협의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는 자는 그 법률에 준용한다.

③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을 면제한다.

④등록금은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본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징수한다. (단,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은 1학기, 2학기 등록금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기별 등록금을 적용하며, 이전 신입생은 학점별 등록금을 적용한다.

③재입학 및 복학생은 당해 동일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개정 2016.11.07.><개정 2019.07.03>

1. 수업일수 1/3이 경과전 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2. 수업일수 1/3이 경과한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질병,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3.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질병, 군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단, 휴학으로 수업개시일 이후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별표]기준에 의거 반환한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⑦학사과정 4학년 2학기 등록금 <신설 2016.7.1.><개정 2019.3.1.><개정 2019.07.03.><개정 2019.11.26.><개정 2021.09.02.><개정 2023.02.23.><개정 2026.04.03.>

1. 4학년 2학기 등록금은 기납부한 여름·겨울학기 등록금을 제외한 차액(이 경우 수강 가능한 학점은 학칙 제33조제2항에 정한 여름·겨울학기 수강가능 학점으로 한다.)과 이를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합산한 금액(이 경우 추가 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7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의 이수학기가 6회(2019학년도부터 신입학한 학생은 5회)인 학생이 학과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추가 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3. 위 각호의 여름·겨울학기 중 2018학년도까지 신입학한 학생이 6회를 초과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였거나, 2019학년도부터 신입학한 학생이 5회를 초과하여 납부한 등록금과 이수학기는 제외한다.
4. 편입학생의 4학년 2학기 등록금은 기납부한 여름·겨울학기 등록금을 제외한 차액
5. 2020학년도까지 편입학한 학생의 4학년 2학기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제6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등록금을 분할납부(이하"분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4회(여름·겨울학기는 2회)에 한하여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분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7.1.><개정 2019.07.03.>

1. 분납학생은 최초 당해 학기에 납부해야 할 수업료의 1/4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단, 여름·겨울학기의 경우 1/2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 1회 분납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부득이 잔여 분납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납부연기 결재를 통해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3. 분납을 신청하고 1회 내지 3회 분납등록금만 납부한 학생이 자퇴를 할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단, 반환금액 기준은 당해 학기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으로 한다)
4. 분납을 신청하고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분납신청을 취소하고, 학칙 제22조 제2항 및 제25조에 의거하여 직권휴학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⑨학사학위 취득 유예자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신설 2010.6.1.><개정 2019.3.1.>

1. 1학기 및 2학기에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
   가. 1학점~3학점까지는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6학점까지는 4학년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9학점까지는 4학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4학년 등록금의 전액
2. 여름·겨울학기에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 학점당 4학년 등록금의 18분의 1 해당액
3. 학점이 부과되지 않는 교과목은 등록금 면제

⑩전과(부) 허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전과(부)가 허가된 학과(부)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휴학자중 등록이 유효한 학생의 경우 전출 전·후 학부(과)간에 등록금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0.6.1.><개정 2019.07.03.>

제4조의2 (여름·겨울학기 징수방법) ①여름·겨울학기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신설 2019.07.03.><개정 2019.11.26.><개정 2021.09.02.><개정 2023.02.23.><개정 2024.12.9.>

1. 학사과정 여름·겨울학기 등록금
   가.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이 수강 신청한 경우 4학년 한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2019학년도부터 신입학한 학생이 수강 신청한 경우 4학년 한학기 등록금의 5분의 1 해당액
   다. 2019학년도 이후 재입학 및 편입학생은 신입학생 진급 학년을 기준으로 동일 학년일 경우 위 나목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위 가목을 적용한다.
   라. 학칙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름·겨울학기에 4학점 내지 6학점을 수강 신청한 경우 4학년 한학기 등록금의 5분의 2 해당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여름·겨울학기 등록금을 2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과 특성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수강학점을 달리하고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및 등록금 납부 인정 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한 자가 여름·겨울학기를 6회 초과하거나,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자가 여름·겨울학기를 5회 초과하여 수강 신청하는 경우 학점당 18분의 1 해당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석·박사과정 여름·겨울학기 등록금
   가. 대학원 학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규학기로 운영되는 여름·겨울학기 등록금은 정규학기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름·겨울학기를 6학점 미만으로 운영하거나, 특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금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학사과정 4학년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여름, 겨울학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신설 2016.7.1.><개정 2018.6.25.><개정 2019.3.1.><개정 2019.07.03.><개정 2019.11.26.><개정 2021.09.02.>

1.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 중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7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단, 2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5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4회 미만 해당자, 3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3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2회 미만 해당자)
2. 2019학년도부터 신입학한 학생 중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7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4학년 등록금의 5분의 1 해당액 (단, 2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5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5회 미만 해당자, 3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1학기 및 2학기 이수학기가 3회이면서 여름 및 겨울학기 이수학기가 3회 미만 해당자, 4학년 편입학생의 경우 최초 여름학기)
3. 위 1호 내지 2호를 1회 적용받은 경우 또는 학칙 제8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한(4학년 겨울학기 포함) 경우에는 수강 신청 학점당 4학년 등록금의 18분의 1 해당액
4. 위 각호의 1학기 및 2학기 중 자율학습제 이수학기 및 여름·겨울학기 중 2019학년도부터 신입학한 학생이 5회를 초과하여 납부한 등록금과 이수학기는 제외한다.

제4조의3 (대학원생 학부 교과목 수강 등록금) ①「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사과정에 입학한 비동일계 전공출신자가 학사과정에서 선이수하는 경우 등록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04.03.>

②「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조제8항 및 「대학원생 학부 교과목 수강 운영 지침」에 따라 학부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04.03.>

1. 등록금은 학점당 학부 수업료의 18분의 1 해당액의 50%을 기준으로 하며, 학기별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등록금의 반환은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징수기일) ①등록금의 징수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단, 여름, 겨울학기는 1학기, 2학기에 각각 포함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입생 및 편입생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3.2.1.><개정 2019.11.2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여름, 겨울학기 수강취소 승인을 얻은 경우
6.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수강취소 승인을 얻은 경우

제7조 (처분 및 조치) ①총장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22조 제2항 및 학칙 제25조에 의거 직권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총장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성적평가, 졸업, 장학생 선발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07.03>

제8조 (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제7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의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한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재입학의 경우에는 동일 학년이 적용받는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2012학년도 여름학기까지 등록금을 유예한 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2016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신청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 휴학자 중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을 한 경우에도 제4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2018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신청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우송대학교 규정 등록금징수규정 [4-4(3)-2a]

제2조 (적용의 특례) 제7조제3항은 이 규정 개정일을 기준으로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2019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을 신청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①제4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사유로 해외연수 및 인턴십 등이 취소되어 수업일수 1/3이 경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
②제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사유로 해외연수 및 인턴십 등이 취소되어 재학 중에 자퇴하거나, 수업일수 30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 중에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4조제7항제4호의 규정은 2020학년도 2학년 편입학생 및 202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4조의3은 202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3.2.1>

등록금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아래와 같은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전액을 반환한다.
3. 휴학생의 경우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을 휴학일로 한다.

가. 1,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나. 여름, 겨울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경과 후	전체 수업시수분의 잔여 수업시수 해당액